

[사례 1]

- (도입 전) 택배노동자 A씨는 5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무릎수술로 인해 4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족의 유일한 소득자였던 A씨의 소득이 없어지자 처음에는 적금을 해약하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워져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다.
- ⇒ (도입후) A씨가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일하지 못하는 4개월간의 생활비를 상병수당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출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없이도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다.

[사례 2]

- (도입 전) 학습지 교사 B씨는 어느날 가슴에 멍울을 발견하였으나, 가정 방문을 빠지게 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병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방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업무 복귀도 그만큼 더 늦어졌다.
- ⇒ (도입후) 멍울을 발견했을 때 아파서 일을 쉬게 되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비교적 초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사례 3]

- (도입 전) 회사원 C씨는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휴식을 권유받았으나, 휴가를 낼 경우 직장에서 눈치도 보이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파도 참고 출근하였다. 그러나 통증 및 가려움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업무효율도 낮아지고, 대상포진이 재발했다가 완화된기를 반복하였다.
- ⇒ (도입 후) 아프면 휴식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소득은 상병수당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어 대상포진이 처음 발병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으며 휴식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하여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대상포진도 재발하지 않았다.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 >

※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 ② 고용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임의가입) 등 포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 ③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기간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Q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A2.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무관)

- 따라서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에 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유급병가를 받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이중 소득 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급병가 등을 우선적으로 소진한 이후에도 부상·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떤 부상·질병일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부상·질병의 종류(유형)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기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수급 가능

Q5.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 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6.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 상병수당신청 접속
- ② (방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③ (우편 또는 팩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

< 시범사업 운영 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사명	주소	우편번호	팩스
종로지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35, 15~16층(서린동, 관정빌딩)	03188	02-3275-8289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14623	032-870-4448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31197	041-850-4436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풍덕재길 15-4	37828	061-729-2305
포항남부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8번길 4	57995	054-230-3330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51439	055-212-9015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7. 한 번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 시에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대보장기간 90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최대보장기간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Q8. (모형 1&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8.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불가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9. (모형 1&2)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A9.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며,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는 상병수당 신청 시에 제출하며, 근로중단 확인서는 상병수당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제출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각각 작성합니다.
- 사업장 또는 소득지급처에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장용 브로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10. (모형 1&2)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0.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진단서와 각종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 신청인의 근로중단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활동 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근로중단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급여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확정된 상병수당 급여 지급일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세계보건기구, 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구분	AS-IS	TO-BE
소득보장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소득 보장 →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건강권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적시 치료 → 중증화 예방, 회복 속도↑
생산성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 생산성 저하 방지
감염병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 정착 → 효과적 감염예방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 ①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②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③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④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⑤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요

- **(목적)**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 변화 등) 및 운영체계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
- **(기간/예산)** '22.7.4(월)~'23.6.30 (1년간), '22년 110억 원 (국비 100%)
- **(지역)** 6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제도설계) - 건강보험공단(집행) - 지자체(협조)

2. 사업 내용

- **(대상)** 지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 **(질병·부상요건)**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효과 분석
 - ① **(모형 1)**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② **(모형 2)** 모형1과 동일,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③ **(모형 3)**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지원내용)**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無)	제한 무(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